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명칭은 ‘민족문학사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민족문학사연구소는 우리 민족문학사를 과학적·실천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민족문학사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국문학 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
- 2) 공동연구 및 연구세미나, 연구발표회
- 3) 연구 등 제반 성과의 출판 보급
- 4)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민족문학사연구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민족문학사연구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회원은 연구원, 명예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연구원

- ① 연구원은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한국문학 및 관련분야 연구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 연구원은 민족문화사연구소가 기획하는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4) 일반회원

- ① 민족문화사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회원을 둘 수 있다.
- ② 일반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연구소의 회보, 연구성과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4) 회비를 일정 기간(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다시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정액의 특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민족문화사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 2인 이내, 운영위원장 1인,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을 둔다.
- 2) 운영위원회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사무부처장을 당연직으로 두며, 약간 명의 상임운영위원을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 1) 대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사무부처장, 감사, 상임운영위원은 제14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을 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대표는 민족문화사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3조 (기구의 구성)

민족문학사연구소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4조 (총회)

-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2)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1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 4) 총회는 대표 및 이사, 감사,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사무부처장, 연구윤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운영위원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정관의 개정,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5)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7)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대표, 이사, 운영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편집위원장, 사무처장의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연구소의 연구 방향 및 전체 사업의 방향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협의·조정하며,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임원을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4) 정기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감사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5)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연구기획위원회)

- 1)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연구기획과 연구활동을 총괄하며 산하에 연구분과와 연구반을 둔다.
- 2) 각 연구분과 및 연구반은 정기적인 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마다 연구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 3)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출판·대중 강좌 사업 등을 총괄한다.
- 4) 연구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기획위원 및 각 연구분과(반)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

- 1) 민족문화사연구소의 학술지를 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 1)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연구윤리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사무처)

- 1) 사무처는 회원 관리, 회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섭외의 업무 등을 총괄한다.
- 2) 사무처는 연구소 활동을 홍보하고 내외의 소통과 연대 활동을 담당한다.
- 3)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및 각 업무별 간사로 구성한다.

제21조 (회의록)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운영위원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2조 (재산의 구분)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민족문화사연구소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수입금)

- 1)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2) 기부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제24조 (출자 및 용자)

민족문화사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예산 및 회계보고)

-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3)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 4) 기부금의 모금 실적과 집행 현황은 매년 3월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민족문화사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 (정관변경)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해산 및 합병)

민족문화사연구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민족문화사연구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민족문화사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단체 민족문화사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9년 8월 21일